

제1절 개요

우리나라의 임야는 오래 전부터 특수보호림을 제외하고 무주공산으로 방치되어 왔다. 이와 같이 비적극적인 임업정책 하에서 국민들은 도처에서 남벌 및 도벌하거나 화전으로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등으로 수목의 식재와 보호는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보호산림 제도가 폐지되어 산림자원의 훼손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이 산림자원의 훼손은 국토의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어 인간생명의 근본인 농업 및 기타 산업의 발전에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정부에서도 산림자원의 복구를 위하여 임업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907년에 정부는 상공부 산하의 농무국에 임업과를 신설하였고, 대구, 수원 및 평양에 수목 묘포장(苗圃場)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식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908년에는 농상공부 산하에 산림국을 두어 임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또한 임업사무관제를 제정하여 농상공부 대신 관할하에 서울, 대구, 평양, 목포, 경성에 임업사무소를 두어 조림을 장려하고 산림조사를 하게 하였다. 1910년에는 간단한 지적조사를 하였다. 경북에는 1931년에 경상북도 임업시험장의 개설과 동시에 대구 동인동에 설치되었던 수목 묘포장(苗圃場)은 그 부속으로 귀속되었다.

1934년 2월 사방사업령이 시행되면서 1935년부터 낙동강 유역의 사방사업을 주축으로 각종 사방사업이 확대 실시되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25동란을 거치면서 산림의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49년부터 “민유림 조림 10개년 계획”과 “사방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 대한 종합시책이 시행되었다.

1961년에는 혁명정부의 수립과 함께 부정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무분별하게 채취되어 쏟아져 나오던 산림자원이 단속되었고, 동년 12월에는 산림법을 제정하여 가중치별조항을 삽입하여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같은 산림관계법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1962년에 산림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처음으로 영립계획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울진군에서는 경상북도의 임업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해안사방이 영일군 및 영덕군과 함께 3개 지구에서 80ha에 달하는 면적에서 시행된 바 있다. 이때에 추진된 사방사업의 조림수종은 포플러와 같은 속성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967년 이후에는 조림사업은 다소 주춤해졌고, 산림의 육림에 치중하면서, 산림의 소득자원화정책이 추진되어 유실수들이 식재되었다. 그래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내 곳곳에 밤나무단지 등 유실수의 대단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1973년에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의 녹화에 힘을 쏟았다. 이때에 경상북도에서는 특수 조림사업을 세워 “경주지역 수종갱신조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오동나무의 조림사업”, 고속도로 및 철로 주변의 “경계조림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도내에 “산림보호특별지역을 1개 군에 1개소[200ha 이상]씩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발정책이 완결됨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대 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수단이 산림자원에서 유류(油類)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산림의 벌채와 개발은 저절로 감소되었고, 각종 공해물질을 정화하는 환경임업의 측면에서 산림자원의 역할이 강조되어 “산림지역에 대한 자연보호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삼림욕으로 풀 수 있는 많은 자연수련원을 육성하게 되었다.



<그림 75> 금강송면 오동나무 단지



<그림 76> 북면 밤나무 양묘장

제2절 산림 보호 정책과 조림 현황

1. 임야면적

우리나라의 임야면적은 전체국토의 6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야의 소유형태, 소유규모 및 합리적인 산림정책의 미비로 효율적으로 산림을 보존,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산물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의 미비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임야소유자 중 1㏊미만의 소유자가 약 60%나 되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의 50% 이상이 산림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아니고 도시